



노인인권교육 관련 장기요양기관 안내문

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「노인복지법」 제6조의3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5조의3에 의거,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.

보건복지부에서 송부한 노인인권교육 관련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연내 노인인권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> 알림·자료실 > 공지사항 > 게시번호 60545

또한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는 노인에 대한 폭력이나 방임 등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니, 장기요양기관 대표자분들께서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 학대(신체적·정신적·성적·경제적 학대 및 방임 등) 및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보도자료 >

▶ **경향신문(2020.6.15.) “코로나19, 취약한 노인처지 선명하게 부각했다”**

- 국가인권위원회 “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동이 제한되어 고립되는 상황에서, 노인에 대한 폭력이나 방임 등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”

▶ **KBS(2020.6.16.) “가려진 ‘노인학대’...가족·요양원까지 폭력”**

-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침대와 휠체어에 묶어 감금했다가 관할 구청에 의해 경찰에 고발

▶ **한겨레(2020.9.4.) “요양원 엄마 보러 먼길 입국했는데...만남 금지된 가족들”**

2020. 9.

국민건강보험공단